



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지는 금번 42호부터 3회에 거쳐 '산재처리 실무'를 한경보 회장 특강으로 연재 합니다.  
회원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제1장

# 업무상 재해 조사 절차

## 1. 재해조사의 의의

### 가. 재해조사의 법적 성격

- 1) 재해조사의 성격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다.
- 2) 재해조사의 성격상 사업주나 근로자 또는 의료기관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.
- 3)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또는 허위답변,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### 나. 법적 근거

#### ○ 산재보험법 제81조(보고 등)

- 1)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(이하 "보험사무대행기관"이라 한다)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2)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3)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4)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'호적법' 제88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○ 산재보험법 제83조(검사)

- 1)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#### ○ 산재보험법 제84조(보고와 검사)

- 1)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등에게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는 제83조 제2항을 준용 한다.

## 다. 유관기관과의 협조

- 1) 사망재해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 
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 
게 통보한다.
- 2) 치료예상기간이 4일 이상인 최초요양  
신청과 관련한 재해조사를 한 경우에  
는 조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  
노동관서장에게 통보한다.
- 3)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  
서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야 하며,  
지방노동관서의 조사대상에서 제외  
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한다.



사진은 본 논고와 관련 없음

## **2. 재해조사 대상**

- 1) 중대재해(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, 시행규칙 제2조1항)

– ‘중대재해’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‘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’ 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

-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
-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
-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

- 2) 업무상 재해여부가 불명확한 경우

– 재해경위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

– 재해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

- 3)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

–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성 보다는 업무의 기인성이 중요시 되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의학적 역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요구된다.

- 4) 기타 보험급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– 취업 후 1주일 이내 재해 및 2회 이상 중복재해와 최초신청 상병보다 주한 상병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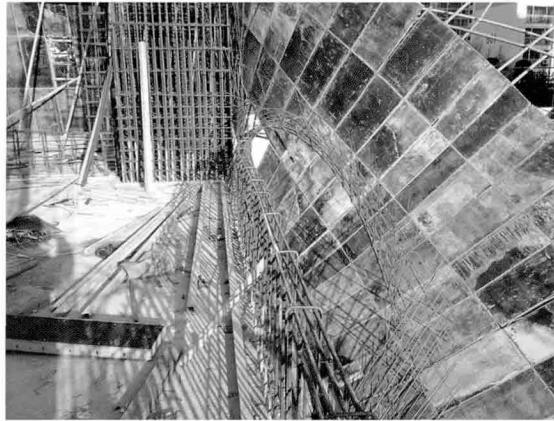
## **3. 재해조사시 유의사항**

- 1) 재해조사시 관련자의 문답서 혹은 진술서 작성은 최 대한 지양하고, 관련자·목격자의 확인서를 참고해 활용하되 재해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가감해 활용한다.

- 2) 재해발생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지 아니한 기업 노무 담당자, 산재담당자, 가족에게는 진술서 혹은 문답서 작성은 지양한다.

- 3)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확인서 등 각종 조사시 일관성을 유지–특히 과로는 인정되나 부지급 함 등의 결정을 지양한다.

- 4) 배우자(가족)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인 피재자 기호, 습관, 출퇴근 시간, 평소 건강상태, 기타 재해당일 가정에서 일어난 상황 역시 문답서나 진술조서로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되 배우자(가족)의 작성이 불가능할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중 작성 가능한 자가 작성한 후 배우자가 확인하도록 조치–특히 재해자가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작성요구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



사진은 본 논고와 관련 없음

5)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, 우선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현장사진, 목격자 및 관련자등의 확인서 징구

6) 소속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출받아야 할 사업자등록증, 임금대장, 출근부, 근로계약서, 작업장소, 작업시간, 피해자 인적사항, 작업내용, 작업시설, 근로환경, 근로자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와 작업중 음주여부, 변화된 작업시간, 내용, 환경 등 기타 재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<붙임8>서식에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것.

- 재해조사시에는 ①업무내용(과로여부), ②기준질환, ③가족병력, ④음주, ⑤흡연습관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사

7) 목격자는 반드시 재해발생 현장에서 근무한 첫 목격자의 자술서를 받도록 하되 특히 요양 불승인되거나 보험 급여자가 부지급되는 민원은 누가 보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해발생상황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자 2~3명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.

8) 원인불명 사망재해의 경우 시체의 해부 거사

-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불명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법원의 판례입장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업

무상 질병으로 이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함

9) 재해발생 상황으로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는 재해는 소관 행정관청에 재해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시 조회

- 교통사고 : 경찰관서 및 자동차 보험회사 조회
- 사망사고 : 노동부 지방관서 및 경찰관서 조회
- 광산사고 : 산업자원부(광산보안사무소)조회
- 화재사고 : 경찰관서 및 소방서
- 군인, 군속의 가해로 발생한 재해 : 관할현병대, 지구배상심의회 등 조회

10) 업무상 재해불승인 또는 부지급할 경우

- 재해조사시 업무상재해로 승인할 경우 그에 대한 서식을 사용하고 불승인 부지급을 할 경우 안내 공문에 의거 산재보험법의 관련규정은 물론 의학적인 소견 등 불승인 또는 부지급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여 처분의 신뢰도 제고

#### 4. 재해조사 거부시의 효과

1) 보험급여의 지급중지

-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함이 곤란하거나 징장을 초래하게 되는 모든 급여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이 이뤄질 때 까지 그 지급을 일시 중지
- 자료제출 거부
  -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서로써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2회 이상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: (예: 제3자 재해발생신고서 미제출, 가재자 와의 합의여부 확인 거부 등)

- 진찰요구 거부

-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않고 2회 이상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은 경우